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수)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목)

4. 제정근거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0. 1.18 법률 제9932호) 제8조
및 제10조

나. 「건강가정기본법」(2010. 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제8조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0 지난 200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71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위축과 정부 재정수지 악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0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서울시 각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마포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출산지원금 지원 형태도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과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는 5개구이며, 대부분 둘째아이부터 약 10-50만원을 지급하면서 둘째아이 이상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첫째아

이, 둘째아이 이상 구분 없이 신생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2011년도 마포구 예산안에 3억7,38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의 재정여건, 주민욕구 및 타구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산축하금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출산축하금 정의를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에 해당하는 정의로 해석되므로 이를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수정을 요함.

안 제3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로 한다)”로 하여 약칭을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는 “구”와 “관내”가 중복

되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하며,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는 규정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지급대상 자격이 없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 현재”는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3조제1항에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부모 모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모 중 1사람만 거주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부와 모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 중 1사람만 거주하여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 또는 모가 거주지에서 각각 출생신고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타구로 전출한 후에도 출산축하금 신청이 조문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에서 “신청”을 “제출”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구 관내 주민등록”에서 “구”와 “관내”가 중복되므로 이를 “구”로 수정을 요함.

안 제6조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본문 규정에 맞게 “지급대상 제외”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 -----.</p>
<p>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 -----6개월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 ----- ----- -----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5조(지급신청) ① (생략)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지급신청)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 ----- ----- 제출----- -----.</p> <p>③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지급절차) ① (생략)</p> <p>1. (생략)</p> <p>2. 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p> <p>3. (생략)</p> <p>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u>출산축하금</u>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u>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u>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지급절차) ①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구 -----</p> <p>3. (원안과 같음)</p> <p>② ----- -----<u>지급대상자</u>----- ----- ----- <u>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u>----- ----- -----</p> <p>--.</p> <p>③ (원안과 같음)</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p>	<p>제9조(지급대상 제외) (원안과 같음)</p>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8조(혼인과 출산)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